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
대상자	성 명		외국인 등록번호	
	학과(전공)		이수학기	
	전화번호		e-mail	

취업 예정 근무처	업 체 명			
	사업자 등록번호		업종	
	주 소			
	고 용 주	(인 또는 서명)	전화 번호	
	취업기간		급여 (시급)	

근무시간	평 일 : 총 시간					주말 : 총 시간	
요일	월	화	수	목	금	토	일
시간							

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,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(또는 연구 활동)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에 확인합니다.

20 . . .

※ 시간제취업허가 [한국어능력기준 제출자]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,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25시간),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.

▶ 한국어능력기준(토픽 기준) : 어학연수 2급, 전문학사 3급, 학사(1~2학년) 3급, 학사(3~4학년) 4급, 석박사 4급이상 ◀

- 한국어 능력기준 미달할 경우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과 학부생 10시간, 석박사과정 15시간으로 제한 -

※ **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[유학생과 고용주]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.**

(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 가능)

○ ○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 귀하

유학생담당자 확인란	소속	중앙대학교	성명	(인 또는 서명)
	인증대학 여부	해당☑ 비해당☐		
	직위 (연락처)			